◉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-116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19일
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

1. 근거법령
   ○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   ○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
   ○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2. 행정처분대상 : 김광태(납부기한 : 2026.11.20.(금))
3. 게재(게시)기간 : 2026.10.19. ~ 2026.11.02.(공고일로부터 14일)
4. 이의제기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5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   ○ 건　　명 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   ○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   ○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  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   (☎ 02-6735-8148 / 팩스 : 02-6735-8144 / E-mail : lshdash@korea.kr)

행정처분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생년월일	고지주소	법　　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번호	광고 내용
1	김0태	1985.10.03.	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융건로 172번길 **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, 제3항, 제4항	18,000,000	010-****-3900	중고 에어컨